

T.R. 대 퀴글리(Quigley), 번호 C09-1677 – TSZ 에 대한 협의 제안서 및 공정 심의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집중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에 관한 소송

T.R. 외 대 케빈 퀴글리(Kevin Quigley) & 도로시 티터(Dorothy Teeter), 번호 C09-1677 – TSZ (“T.R.”)는 메디케이드(Medicaid) 보험으로 청소년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집중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입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워싱턴주 청소년들 가운데 집중 치료 관리,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동 위기 및 안정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본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향후 5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본 합의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합의를 예비 승인한 상태입니다. 귀하는 합의서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심의회에서는 합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접수한 의견을 검토합니다. 그런 뒤 합의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T.R. 소송은 집단 소송입니다. 집단 소송의 경우, 소수의 개인이 동일한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본 소송은 2009년에 10 명의 젊은이(“집단 대표”라고 칭함)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들은 모두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법원은 이 집단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송 결과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나이가 21 세 이하이고 현재 혹은 추후 (1) 워싱턴주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2) 인가된 치료 기관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거나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 또는 평가를 통해 정신 질환이 있다는 판정을 받거나, (3)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장애가 있거나, (4) 인가된 치료 기관에서 메디케이드가 보장하는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의 집중 서비스를 권장하는 모든 사람을 집단 구성원으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집단 대표는 물론이고 이 집단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이 본 소송의 원고가 됩니다.

5 개 법률 사무소가 원고 집단의 구성원들을 대리하고 있는데,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National Center for Youth Law, National Health Law Program, Young Minds Advocacy Project, Perkins Coie, LLP 등입니다. 법원은 이들 법률 사무소의 자격과 경력을 확인한 뒤, 이들을 집단 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피고는 워싱턴주 보건복지부와 워싱턴주 보건국입니다.

합의서의 목적은 집단 구성원이 메디케이드가 비용을 지불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집중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일컬어 포괄적인 집중 서비스(“WISe”)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집단 구성원이 지금 당장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주 전역의 유자격자 전원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기까지 최대 5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의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유자격 구성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WISE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합의서는 3 가지 기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표

목표는 합의 계획에 필요한 체계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책임과 완료 조건을 비롯해 합의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향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2) 책임

책임은 WISE 개발과 제공을 위해 피고인들이 하게 될 일이나 활동을 가리킵니다. 책임 내용은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계획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피고측은 법원에서 이 소송을 다루는 동안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완료 조건

완료 조건이란 소송을 기각해도 될 만큼 피고측이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활용하는 사항이나 결과물을 말합니다. 피고측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필수적인 완료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I. 목표

합의서의 주요 목표는 집단 구성원 후보를 식별, 심사, 평가하고 WISE 서비스가 필요한 유자격 구성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 WISE 는 시기적절하게 주 전체에 제공되며,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그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서비스는 각 구성원의 요구에 맞춰서 제공되고 WISE 프로그램 모델과도 일치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주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따릅니다.
-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한 구성원은 항소할 권리가 있고 공정한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대상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조정해서 서비스 효율을 개선하고 가족과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안겨줍니다. 이런 조정 작업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가 단편화되는 것을 막고 중복이나 낭비를 피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코칭,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아동 대상 기관, 청소년과 그 가족, 기타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 합의서의 변경 사항이 실행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이를 합의서의 "관리 체계"라고 부릅니다.
- 합의서는 입원 및 가정 외 배치 사례가 줄어들도록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 합의서에 따라 WISE 를 이용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비행을 줄이고, 청소년기의 발달을 촉진하며,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II. 책임

피고측은 합의서에 따라 세부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판사는 소송이 종료되거나 기각될 때까지 피고들이 기한 내에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 판사가 동의할 경우 기한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WISE 이용 및 서비스 제공

피고측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메디케이드가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 집중적인 치료 관리,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집중 서비스, (3) 이동 위기 개입 및 안정화 서비스. 다음과 같은 3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WISE 라고 합니다. WISE 는 "포괄적인 집중 서비스(Wraparound with Intensive Services)"의 약자이며, 이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합의서 전문의 부록 A 에 나와 있습니다.

B. 2014 년도 주 회계연도의 서비스와 원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피고측은 2014 년 1 월부터 기존에 집중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던 이들을 WISE 로 이관하기 시작할 예정인데, 요구에 부응하기에 충분한 서비스와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됩니다.

C. 인력 개발 및 훈련

피고측은 WISE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 훈련시키기 위한 그룹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그룹은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과 가족, 주정부 기관, 제휴한 대학들이 공동으로 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지속 가능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WISE 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위한 교육, 코칭, 멘토링, 기술 지원도 훈련 과정에 포함됩니다. 훈련은 각 지역과 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WISE 제공자들이 품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D. 집단 구성원들을 위한 정당한 법 절차

구성원들은 본인이 받는 서비스와 관련된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심의회가 열립니다. 심의회에서는 불편부당한 제 3 자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정당한 법 절차라고 합니다. 피고측은 선불 입원환자 건강보험(PIHP)(지역 후원 네트워크라고도 함)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PIHP 는 조치 통지서를 발송해서 권리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 통지서는 PIHP 가 서비스를 거부, 종료 또는 축소하거나 집단 구성원이

특정한 치료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법 절차와 관련된 권리를 구성원들에게 알려줍니다. 피고측은 이 통지서와 정당한 법 절차 보호에 관한 내용을 주정부 규정집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E. 관리 및 협업

합의서는 WISE 서비스 제공 방식을 결정할 때 가족과 청소년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피고측은 가족, 청소년, 지역사회 담당자가 지역 관리 그룹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이 그룹을 가리켜 가족, 청소년, 시스템 파트너 토론회(FYSPRT)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관리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피고측은 주 전역의 청소년 지원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DSHS 와 HCA 산하 기관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합의서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WISE 를 받으면 필요한 치료를 논의할 아동 가족 팀이 구성됩니다. 해당 청소년이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기관의 지역 담당자도 아동 가족 팀에 참여하고, 재원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피고측은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피고와 FYSPRT 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서비스 개선 방법을 정합니다.

F. 품질 관리

피고는 품질보증계획(QAP)을 세워야 합니다. 이들은 원고측 변호인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QAP 에는 본 합의서에 따른 품질 보증 틀과 활동 개발 방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QAP 는 기존 품질 보증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활동 등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QAP 는 합의서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과정과 그 진도를 평가합니다.

피고측은 식별과 심사, 평가 과정을 거쳐 WISE 에 위탁한 아동의 수를 계산하고 합의서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대중에게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QAP 는 합의서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G. 실행 계획과 절차

피고측은 합의서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 승인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실행 계획을 완성해야 합니다. 피고는 위에서 설명한 관리 체계를 이용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FYSPRT 의 정보 활용도 여기 포함됩니다. 원고측 변호인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고는 완성된 실행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계획안을 승인합니다.

피고측은 2014 년 11 월 15 일부터 판사와 원고, 대중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피고측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 진행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한 일과 남아 있는 과업도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며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문제도 밝힐 것입니다. 또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설명합니다.

III. 완료 조건과 절차

소송 당사자들은 피고측이 2018년 6월 30일경까지 합의서 실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피고측이 완료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합의서에 따른 모든 의무가 종료됩니다. 완료 조건은 워싱턴주가 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판사가 소송을 기각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측정 기준입니다. 워싱턴 주가 모든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완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WISe 이용 및 서비스 제공
- 정당한 법 절차 보호
- 시스템간 협업 및 관리
- 실행 계획
- 품질 관리

IV. 원고측 소송 대리인의 정보 이용

원고측 변호인은 본 합의서의 실행 과정을 감시합니다. 변호인들은 피고측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합의서만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부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합니다. 원고측 변호인들이 구성원의 개인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측 변호인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위해 판사의 명령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V. 변호인 수수료 및 비용.

법원의 승인 하에, 피고측은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310 만 달러(\$3,100,000.00)의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의 '수수료 및 비용 지원 각서(Memorandum in Support of Fees and Costs)'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와 지불한 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isabilityrightswa.org/kids-community-based-mental-health>

수수료 및 비용 지원 각서와 관련 사항을 지지하는 자료 사본을 획득하려거나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래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전화하거나 워싱턴 주 장애인의 권리(Disability Rights Washington) 사무실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1-800-562-2702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315 5th Ave S. Suite 850
Seattle, WA 98104

TRLawsuit@dr-wa.org

KO

VI. 부가 정보 및 공정 심의회

본 문서에는 합의서 내용이 요약되어 있을 뿐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거나 판사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하고 싶은 경우,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 전문 읽기. 귀하나 귀하의 지인이 집단 구성원인 경우, 다음 웹사이트 주소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www.disabilityrightswa.org/kids-community-based-mental-health>

또 부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합의서 전문 사본을 제공하고 WISE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 방법을 설명한 문서도 있습니다.

화상 회의와 정보 세션에 참여하십시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워싱턴주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본 합의서와 관련된 화상 회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황 프레젠테이션도 두 차례 열립니다. 날짜와 장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wa.org/kids-community-based-mental-health>

질문하기. 합의서는 내용이 길고 세부적인 정보로 가득합니다. Disability Rights Washington(DRW)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DRW는 집단 구성원들을 위해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DRW와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인 1-800-562-2702 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DRW 나 법원에 전달하십시오. 합의서와 관련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 싶은 분은 우편이나 이메일, 기타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워싱턴주 장애인의 권리(Disability Rights of Washington)로 의견을 보내십시오.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315 5th Ave. S., Suite 850
Seattle, WA 98104
TRLawsuit@dr-wa.org

DRW 또는 본 소송에 참여한 집단 변호인이 접수한 모든 의견은 법원에 제출됩니다.

서면 의견은 직접 법원에 전달할 수도 있으며, 늦어도 2013년 12월 5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때 본 사례에 대한 사례 번호(No. C09-1677-TSZ)를 서면에 반드시 적어 아래 법원 주소로 보내십시오.

Office of the Clerk of the Cour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 Seattle
700 Stewart Street
Seattle, WA 98101

공정 심의회에 참가하십시오.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에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공정 심의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심의회가 열리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ourtroom of the Honorable Thomas S. Zill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 Seattle
700 Stewart Street, Floor 15
Seattle, WA 98101